

세계지방자치동향



지방재정

- (한국)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의 정부 간 비용부담 비율 개선방안

지역발전

- (일본) 도쿄 올림픽을 앞둔 일본의 교통 배리어 프리정책
-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의 주택 후원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의 정부 간 비용부담 비율 개선방안

현행 보조사업 비용부담 비율의 개선 필요성

- 현재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는 광역-기초 간 재원분담 기준의 설정을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위임하고 있음
-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별표]에서는 111개 사업에 대해서만 기준부담률을 제시하고 있어, 전체 국고보조사업을 포괄하지 못하는 문제를 나타내고 있음
- 이러한 측면에서 국고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중앙-광역-기초 간 배분에 있어서 기준부담률의 적용대상 및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의 비용부담 비율 개선방안

- 첫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별표 1]에 규정된 사업에 대해 기준부담률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동법 시행령 [별표 1]은 121개 국고보조사업의 중앙-지방 간 재원분담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별표]에서는 111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만 기준부담률을 제시하고 있음
 - 중앙-지방간 기준보조율과 광역-기초 간 기준부담률이 일치되지 않는 사업이 존재하여 국고보조사업 수행에 있어서 명확한 재원분담 기준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현재 121개의 중앙-지방간 기준보조율 사업 중 국비 100% 사업을 제외하고 68개 사업에 대한 광역-기초 간 기준부담률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
 - 국고보조사업의 중앙-지방간, 광역-기초 간 재원분담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국가-광역-기초 간 재원분담 기준을 일원화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일본의 경우 국고보조사업의 재원분담 기준을 개별 법령에서 국가, 광역, 기초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저소득자 보험료 경감부담금 사업'의 경우 「개호보험법 시행령」 제38조에서 국가 50%, 광역 25%, 기초25%의 비용부담 비율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

- 또한 121개 사업 중 30.8%만 기준보조율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도 필요한 것으로 생각됨
- 둘째, 국고보조사업 일몰제와 연계하여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의 현실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관련 규정의 현실적합성 여부를 분석한 결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121개 사업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전혀 수행되고 있지 않은 사업이 12개로 나타났음
 - 해당 규정이 2018년 12월에 개정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혀 수행되지 않는 사업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앞에서 제시한 것처럼 일본은 국고보조사업의 재원분담 기준을 개별 법령에서 국가-광역-기초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같은 국고보조사업은 운영하지 않고 계약을 통해 포괄보조금 형태로 국가-광역-기초 간 재원분담률을 설정하고 있음
 - 이러한 측면에서 개별 사무에 대해 광역-기초 간 재원분담 기준을 설정하는 방식을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데, 일본 사례처럼 모든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개별적인 광역-기초 간 재원분담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계획계약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개별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부담률을 계약을 통해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 또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개별 사무에 대한 기준부담률과 동일 사업군 또는 사업 유형에 대한 기준부담률을 다르게 설정하는 방식(2-track)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즉, 개별 사무의 수준에서는 광역-기초 간 협의 또는 협약을 통해 일정기간 동안 기준부담률을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다수의 개별적인 사무를 포함하는 동일 사업군 또는 사업 유형의 수준에서는 법률에 중앙-광역-기초 간 기준부담률을 설정하도록 하는 방식임
 - 예를 들어 노인복지 관련 사업의 경우 최소한의 기준부담률(예를 들면 50%)을 법률에서 설정하고, 노인복지 관련 세부사업들의 경우에는 해당 자치단체의 특성에 맞게 광역-기초 간 협의 또는 협약을 통해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하는 것임
 - 개별적인 노인복지 사업의 기준부담률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지만, 해당 광역자치단체의 전체 노인복지 사업의 기준부담률은 일정수준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음

- 셋째, 보다 근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보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기존에는 중앙-지방이란 이분법적인 생각으로 지방자치단체인 광역과 기초간의 불합리한 관계에 대해서는 크게 논의되지 않았음
 - 그러나 재정분권 과정에서 광역과 기초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단순히 지방이란 이름으로 포괄해서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음
 - 핵심적인 쟁점은 현재의 지방세 구조에서는 자체재원 증가로 인한 혜택은 주로 광역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반면에, 국고보조사업 등의 이양으로 인한 부담은 기초자치단체에 보다 크다는 것임
 - 이러한 측면에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예산을 부담하는 시·도비 보조사업 추진 시 반드시 소속 기초자치단체와의 예산정책 협의를 거쳐 시행하도록 하는 절차와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즉, 가칭 광역-기초 간 지방재정부담심의회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 광역이 독자적으로 결정한 사업은 광역이 전적으로 재정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생각됨

부록 1.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부담에 대한 시·도와 시·군·구의 부담비율(제2조제1항 관련)

(단위 : %)

연번	사업명	특별시·광역시		도	
		시	구	도	시·군
1	민방위 인력 동원	50	50	50	50
2	도서종합개발	30	70	50	50
3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30	70	30	70
4	공립전문대학 운영비 지원	100	0	100	0
5	지방체육시설 지원	50	50	50	50
6	생활체육교실 운영	50	50	50	50
7	지역항토축제지원	50	50	50	50
8	작은도서관 도서관구입 지원	50	50	50	50
9	문화상품전개회 지원	50	50	50	50
10	항토사료관 및 문화사랑방 시설	50	50	50	50
11	공동도서관 건립운영 지원	50	50	50	50
12	공립박물관 건립	100	0	100	0
13	지방문예회관 건립	50	50	50	50
14	농어촌공공도서관 건립 운영 지원	50	50	50	50
15	전통사찰 정비	50	50	50	50
16	유명예술인 기념 사업	50	50	50	50
17	상설문화프로그램 개발 지원	100	0	100	0
18	전통예술 상설 공연	50	50	50	50
19	발기반 정비	50	50	50	50
20	한밭대비 농업용수 개발	50	50	50	50
21	농공단지 조성 지원	50	50	50	50
22	기계화경작로 확장 및 포장	50	50	50	50
23	토양개량 사업	50	50	50	50
24	대구회경지 재정리	50	50	50	50
25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건설	50	50	50	50
26	지역특화 사업	50	50	50	50
27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50	50	50	50
28	축산물 검사	50	50	50	50
29	환경농업지구 조성	50	50	50	50
30	석탄비축	50	50	50	50
31	외국인 투자유치(경상, 자본)	50	50	50	50
32	농어촌 전기공급 사업	50	50	50	50
33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 시설	50	50	50	50
34	특별대책지역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지원	0	0	50	50
35	고도정수처리 시설	50	50	50	50
36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50	50	30	70
37	폐금속광산 오염방지 시설	50	50	50	50
38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50	50	50	50
39	합병정화조 설치 지원	50	50	50	50
40	하수처리시설 지원	50	50	50	50
41	자연환경보전 시설 지원	50	50	50	50
42	비위생매립지 정비	50	50	0	0
43	모자보건 관리	50	50	50	50
44	결핵환자 보호시설 운영	100	0	100	0
45	한센장애인 보호	100	0	100	0
46	급성전염병 관리	100	0	100	0
47	정신질환시설 운영비	100	0	100	0
48	의료보호	100	0	70 80	시30 군20
49	부랑인보호	100	0	100	0
50	노인시설보호 기능보강	100	0	100	0
51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100	0	100	0
52	생계급여	50	50	50	50
	-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의 최종예산상 시·군·구의 사회보장비 지수가 25 이상이고 재정 자주도가 80 미만인 경우	70	30	70	30
	-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의 최종예산상 시·군·구의 사회보장비 지수가 20 미만이고 재정 자주도가 85 이상인 경우	30 이상	70 이하	30 이상	70 이하
53	주거급여	50	50	50	50
	-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의 최종예산상 시·군·구의 사회보장비 지수가 25 이상이고 재정 자주도가 80 미만인 경우	70	30	70	30
	-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의 최종예산상 시·군·구의 사회보장비 지수가 20 미만이고 재정 자주도가 85 이상인 경우	30 이상	70 이하	30 이상	70 이하

연번	사업명	특별시·광역시		도	
		시	구	도	시·군
54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학비 지원	100	0	50	50
55	응급의료체계 구축	100	0	100	0
56	공공의료기반 확충	100	0	50	50
57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100	0	50	50
58	노인 여가시설운영 지원	50	50	30	70
59	경로연금	70	30	50	50
60	병원선 운영	100	0	50	50
61	부랑인보호시설 기능보강	100	0	50	50
62	지방공사의료원 시설 지원	100	0	100	0
63	고용촉진 훈련	100	0	50	50
64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100	0	100	0
65	시 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	100	0	50	50
66	도시철도 건설사업비 지원	100	0	0	0
67	도시철도 운영보조(원리금 상환)	100	0	0	0
68	종합유통단지 진입도로	100	0	0	0
69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	100	0	50	50
70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100	0	50	50
71	영유아보육사업	50	50	50	50
	-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의 최종예산상 시·군·구의 사회보장비 지수가 25 이상이고 재정 자주도가 80 미만인 경우	70	30	70	30
	-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의 최종예산상 시·군·구의 사회보장비 지수가 20 미만이고 재정 자주도가 85 이상인 경우	30 이상	70 이하	30 이상	70 이하
72	보육시설기능보강	50	50	50	50
73	가정폭력·성폭력 방지 및 보호지원	100	0	50	50
74	서해5도 공동유원선 운영	50	50	50	50
75	인공어초시설	100	0	100	0
76	도립 종묘배양장 시설	100	0	100	0
77	시·도 지도선 건조	0	0	100	0
78	2중 어항 건설	100	0	100	0
79	어장 정화	0	0	30	70
80	시·도 어업지도선 유류비 지원	100	0	100	0
81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100	0	50	50
82	어장정화선 운영비 지원	100	0	100	0
83	오염해역 준설	50	50	50	50
84	어촌종합개발	50	50	50	50
85	지방 수산과학관 건립	100	0	100	0
86	양어장 수질정화시설	100	0	50	50
87	양식용 기자재 공급	50	50	50	50
88	종묘 매입·방류	50	50	50	50
89	어선용 기자재 공급	100	0	100	0
90	어선정화조 건조	100	0	50	50
91	육지 소규모 어항 개발	30	70	30	70
92	농업기계화 훈련 지원	100	0	30	70
93	산림병해충 방제	30	70	30	70
94	임업협동조합 운영비	100	0	0	100
95	영림계획	100	0	50	50
96	산불방지 대책	30	70	30	70
97	조림	30	70	30	70
98	육림	30	70	30	70
99	사방	70	30	70	30
100	자연휴양림 조성	50	50	50	50
101	산림박물관 및 수목원 조성	100	0	100	0
102	임도건설	30	70	50	50
103	임산물유통구조 개선	50	50	50	50
104	수출임산물 생산 지원	50	50	50	50
105	산촌종합개발(마을조성)	50	50	50	50
106	협업체단지소득 조성	50	50	50	50
107	임산물저장 시설	50	50	50	50
108	미약중독자 재활 진료비	50	50	50	50
109	국가지점문화재 보수·정비	100	0	50	50
110	만행위교육·운영 및 시설·장비보강	50	50	30	70
111	119 구조·구급대 장비보강	100	0	100	0

※ 비고 : 광역시와 광역시 관할 군간의 부담비율은 도와 군간의 부담비율을 적용한다.

부록 2.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제4조제1항 본문 관련)

사업	기준보조율(%)	비고	사업	기준보조율(%)	비고
1. 일반여권 발급	100		37. 삭제 (2018. 12. 18.)		
2. 119구조장비 확충	50		38. 경전철 건설	정액	
3. 민방위 교육훈련 및 시설·장비 확충	30		39. 횡단보도도로 건설	정액	
4. 재해 위험지역 정비	50		40. 해양 및 수자원 관리	50	내역사업 중 연안보전사업은 보조율 70%
5. 삭제 (2019. 12. 24.)					
6. 삭제 (2019. 12. 24.)			41. 삭제 (2019. 12. 24.)		
7. 배수 개선	100		42. 지역거점 조성 지원	100	내역사업 중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 지원사업은 보조율 50%
8. 방조제 개·보수					
가. 국가관리	100		43.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 지원	30	
나. 지방관리	50		44. 삭제 (2019. 12. 24.)		
9. 가뭄대비 농업용수 개발	80		45. 해양보호구역 관리	70	
10. 도랑개량사업	70		46. 도시철도 건설	서울: 40 지방: 60	민간투자 경량철철건설사업은 제외
11. 가족분노처리시설 지원			47. 산림병해충 방제		
가. 정착촌 구조개선	50		가. 약제대금	100	
나. 개별시설	20		나. 기타	50	
다. 공동자원화시설 퇴비화(堆肥化)·액비화(液肥化) 시설	40		48. 산불방지 시설·정비 확충 및 운영	40	
라. 공동자원화시설(에너지화 시설)	50		49. 조림사업(造林事業)		
12. 삭제 (2019. 12. 24.)			가. 장기수(長期樹)	60	
13. 연근해어선 감척(減隻)	연안: 80 근해: 100		나. 큰나무	50	
14. 농기계임대사업	50		50. 숲 가꾸기	50	
15. 농업소득보전교정직접지불	100		51. 사방사업	70	
16. 유기질비료 지원	정액		52. 산림휴양 녹색공간 조성	50	
17. 농업임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50		53. 임산물(林産物) 유통구조 개선	50	
18. 소규모 바다목장	50		54. 임산물 생산기반 정비	20	
19. 농가경영안정 재해 대책비(공공시설)	국가관리: 100 지방관리: 50 한국농어촌공사 관리: 70		55. 삭제 (2019. 12. 24.)		
20. 못가름 작물 종자대금	50		56. 임도시설	70	
21. 친환경농업기반 구축			57. 산림서비스 증진	50	
가.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30		58. 농업전문인력 양성교육	50	
나.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계속: 40 신규: 30		59. 시·군농업기술센터 육성·운영 및 시설장비 보강	50	
22. 광역클러스터 활성화	50		60. 원림종(原原種) 및 원종 생산	100	
23. 농산물유통 개선	40		61. 지역농축지도사업 활성화	50	
24. 공단폐수종말처리시설	수도권: 50 그 밖의 지역: 70	수도권(「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다)은 수익자부담 50%	62. 지역전략적목축 산업 협력사업	100	
25. 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일반: 50 추가: 70 우선: 10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농어촌지역의 구분에 따라 지원	63. 지역농업특성화기술 지원	50	
26. 폐기를 처리시설	서울특별시: 30 광역시: 40 시·군 및 도서지역: 50	서울특별시·광역시는 공동시설만 지원하고, 시·군의 단독시설 및 도서지역의 매립시설은 30퍼센트 지원	64.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40	용지매입비 제외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사업은 보조율 80%
27. 삭제 (2016.4.28.)			65. 관광자원 개발	50	용지매입비 제외
28.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	70		66. 전국체육대회 운영	50	
29.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정액		67. 국제경기대회(동계대회 포함) 지원		
30. 비위생매립지 정비	50		가. 도로(동계)	50(70)	
31. 하수처리장 확충			나. 경기장	30	
가. 광역시	10		68. 체육진흥시설 지원	30	
나. 광역시(종인처리시설)	50		69. 전국체전시설 지원	30	용지매입비 제외
다. 시지역(읍 이상)	50		70. 삭제 (2019. 12. 24.)		
라. 군지역(면 이하)	70		71. 지역문화산업 육성 지원	50	
마. 주한미군공여구역, 방폐장 주변지역	80		72. 삭제 (2019. 12. 24.)		
32. 분뇨처리시설 확충	50		73.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70	
33.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70		74. 지방의료원 기능 강화	50	
34.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광역시: 30 도청소재지: 50 일반 시·군: 70		75. 선진성대사이상검사 및 소아환자 관리	서울: 30 지방: 50	
35. 가족분노공공처리시설 설치			76. 한센환자 보호시설 운영	서울: 50 지방: 70	
가. 광역시	60		77. 한센양로자 지원	서울: 30	
나. 광역시(군지역)	80		78. 국가예방접종 실시	지방: 50	
다. 시·군·구	80		79. 방과 후 돌봄서비스	서울: 30 지방: 50	
라. 지역단위 통합관리 센터(전지역)	70		80.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서울: 50 지방: 80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년도 최종 예산에서 가. 사회복지비 지수가 25 이상 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상 나. 사회복지비 지수가 20 미만 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5 이
36.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	정액	공사비만 해당(용지보상비 제외)			

사업	기준보조율(%)	비고	사업	기준보조율(%)	비고	
8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서울: 50 지방: 80	상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하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 최종 예산에서 가. 사회복지비 지수가 25 이상 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상 나. 사회복지비 지수가 20 미만 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5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하	95. 보육돌봄서비스, 육아 종합 지원서비스 제공, 어린이집 교원 양성 지원, 어린이집 지원 및 공공형어린이집	서울: 20 지방: 50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 최종 예산에서 가. 사회복지비 지수가 25 이상 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상 나. 사회복지비 지수가 20 미만 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5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하	
8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활급여	서울: 50 지방: 80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 최종 예산에서 가. 사회복지비 지수가 25 이상 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상 나. 사회복지비 지수가 20 미만 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5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하	96.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운영	서울: 50 지방: 80	97. 장애인활동 지원	서울: 50 지방: 70
83.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해산급여·정제급여	서울: 50 지방: 80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 최종 예산에서 가. 사회복지비 지수가 25 이상 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상 나. 사회복지비 지수가 20 미만 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5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하	98. 장애인연금	서울: 50 지방: 70	99.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서울: 50 지방: 70
84.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	서울: 50 지방: 80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 최종 예산에서 가. 사회복지비 지수가 25 이상 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상 나. 사회복지비 지수가 20 미만 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5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하	100.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서울: 50 지방: 70	101. 농어업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서울: 50 지방: 70
85.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	서울: 50 지방: 80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 최종 예산에서 가. 사회복지비 지수가 25 이상 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상 나. 사회복지비 지수가 20 미만 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5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하	102. 사회적기업 육성	서울: 50 지방: 70	103. 지방과학문화시설 확충사업	서울: 50 지방: 70
86.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 요양시설 운영	서울: 50 지방: 70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 최종 예산에서 가. 사회복지비 지수가 25 이상 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상 나. 사회복지비 지수가 20 미만 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5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하	104. 가족관계등록사무	서울: 50 지방: 70	105. 위험도로구조 개선	서울: 50 지방: 70
87.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자녀 학비 지원	서울: 50 지방: 80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 최종 예산에서 가. 사회복지비 지수가 25 이상 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상 나. 사회복지비 지수가 20 미만 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5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하	106.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서울: 50 지방: 70	107.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서울: 50 지방: 70
88.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서울: 50 지방: 70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 최종 예산에서 가. 사회복지비 지수가 25 이상 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상 나. 사회복지비 지수가 20 미만 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5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하	108.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서울: 50 지방: 70	109.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조성	서울: 50 지방: 70
89. 영유아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	서울: 35 지방: 65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 최종 예산에서 가. 사회복지비 지수가 25 이상 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상 나. 사회복지비 지수가 20 미만 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5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하	110. 삭제 <2019. 12. 24.>	서울: 50 지방: 70	111.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서울: 50 지방: 70
90.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서울: 50 지방: 80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 최종 예산에서 가. 사회복지비 지수가 25 이상 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상 나. 사회복지비 지수가 20 미만 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5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하	112. 하수관로 정비	서울: 50 지방: 70	112. 하수관로 정비	서울: 50 지방: 70
91. 사회복지보장시설 및 장비 지원	50	재가노인복지시설 개수·보수 제외 용지매입비 제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의 신축·증축·개축만 해당(용지매입비 제외)	113. 비점오염저감사업	서울: 50 지방: 70	113. 비점오염저감사업	서울: 50 지방: 70
92. 어린이집 기능 보강	50	재가노인복지시설 개수·보수 제외 용지매입비 제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의 신축·증축·개축만 해당(용지매입비 제외)	114. 우수저류시설 설치	서울: 50 지방: 70	114. 우수저류시설 설치	서울: 50 지방: 70
93. 화장시설·불안시설·자연장지·화장로	70	재가노인복지시설 개수·보수 제외 용지매입비 제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의 신축·증축·개축만 해당(용지매입비 제외)	115.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운영	서울: 50 지방: 70	115.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운영	서울: 50 지방: 70
94. 긴급복지지원	서울: 50 지방: 80	재가노인복지시설 개수·보수 제외 용지매입비 제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의 신축·증축·개축만 해당(용지매입비 제외)	116.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서울: 50 지방: 70	116.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서울: 50 지방: 70
			117.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운영	서울: 50 지방: 70	117.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운영	서울: 50 지방: 70
			118. 양로시설 운영	서울: 50 지방: 70	118. 양로시설 운영	서울: 50 지방: 70
			119. 정신요양시설 운영	서울: 50 지방: 70	119. 정신요양시설 운영	서울: 50 지방: 70
			120.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	서울: 50 지방: 70	120.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	서울: 50 지방: 70
			121. 현대아동보호쉼터 설치 및 운영	서울: 50 지방: 70	121. 현대아동보호쉼터 설치 및 운영	서울: 50 지방: 70
			122. 그 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이해관계가 있고 보조금의 교부필요한 사업	서울: 50 지방: 70	122. 그 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이해관계가 있고 보조금의 교부필요한 사업	서울: 50 지방: 70

흥근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